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양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5자간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공적인 설립과 사업화를 통해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 협력한다.

1. 보유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공동 설립한다.
2. 출자규모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출자한다.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발굴, 기술출자, 기술창업, 기술금융 등 기술사업화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5.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한다.
6. 기타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련하여 상호 협의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협약기관은 상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협약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4조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사전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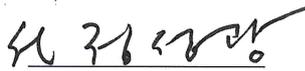
제6조 (협약의 변경) 협약내용의 변경사유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15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1. 23.

 **KNU**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


 **경운대학교**
KYUNGWON UNIVERSITY

총장 김향자


 **KIU** 경일대학교

총장 정현태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총장 신일희


 **kit** 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총장 김영식


 **대구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총장 홍철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김덕진
직무대행


 **대구한의대학교**
Daegu Haany University

총장 변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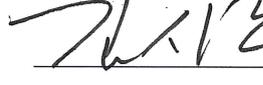

 **dongguk** gyeongju
UNIVERSITY

총장 이체영


 **동양대학교**
DONGYANG UNIVERSITY

총장 최성해


 **국립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형진


 **YU** 영남대학교

총장 노석균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총장 김정기


 **협업 경북테크노파크**
GYEONGBUKTECHNOPARK

원장 장래웅


 **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법안 DAEGU TECHNOPARK

원장 송인섭
